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공무원교육원계정),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장(소방학교계정)
2. 분임기금운용관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공무원교육원계정),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학과장(소방학교계정)
3. 기금출납원 :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제11조(사무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좌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운용기금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운용기금은 기금설치연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9
----------	-----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소방서(동작)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동작소방서 신설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460-19

○ 관할구역 : 동작구 일원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관악소방서 : 관악구 일원 (당초 관악구, 동작구 일원에서 동작구 삭제)

○ 동작소방서 : 동작구 일원 신설

다. 참고사항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직속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설치)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신대방동 460번지 19호에 동작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작소방서가 2000년 8월 개설했을 때 동 조례 제25조 제2항 별표1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에 이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관악소방서의 관할구역중 동작구 일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p>됩니다.</p> <p>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생략</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620</td> <td style="width: 70%; text-align: right;">2000. 7. . 기획경제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p> <p>가. 제안이유 동작소방서 및 직할파출소와 119구조대 시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p><input type="checkbox"/> 소방직공무원 정원 증원 : 9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4,881명 → (개정) 4,980명 ※ 총 계 99명 동작소방서 37명 직할파출소 47명 119구조대 15명 <p>다. 참고사항</p> <p><input type="checkbox"/>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p> <p>※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input type="checkbox"/>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소방서가 신설되어 2000년 8월 개정하게 됨에 따라 소요인력 	의안 번호	620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p>99명을 증원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661명에서 15,760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에 규정된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표1)는 16,369명에서 16,468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표2)는 16,019명에서 16,118명으로 각각 조정하며, - 동 조례 제2조와 부칙 제2조의 표1, 표2의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4,881명에서 4,980명으로 하는 것으로 <p>○ 신설된 동작소방서는 정원을 109명(본서 37명, 직할파출소 53명, 119구조대 19명)으로 책정하여 99명은 순증원하고 부족한 원중 10명은 타 소방관서에서 보충하는 것으로서 기존 소방서의 평균인력이 138명(본서 61명, 직할파출소 58명, 119구조대 19명)임을 감안할 때 금번 정원조정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p> <p>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생략</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621</td> <td style="width: 70%; text-align: right;">2000. 7. . 기획경제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p> <p>가. 제안이유 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에 따라 신설된</p>	의안 번호	621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의안 번호	620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의안 번호	621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